

## 2022년도 노후택시 대·폐차 지원사업 연장 공고

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택시 서비스 수준 향상과 시민 안전 도모를 위한 2022년도 노후택시 대·폐차 지원 사업기간을 연장 공고하오니 택시운송사업자께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2. 11. 21.

### 인천광역시

#### 지원조건 ※ 배기량(cc) 무관

- ① 인천광역시에 사업장 주소지를 둔 인천시 택시운송사업자
  - 차령이 일반택시 2년 이상, 개인택시 5년 이상 경과한 차량이거나,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대·폐차하는 택시
- ②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여, 대·폐차로 기존 차량 등록 말소 후 신차 등록('22. 1. 1.이후) 완료자 \* 소급지원

사업량 : 2,600대(개인택시 1,400대, 일반택시 1,200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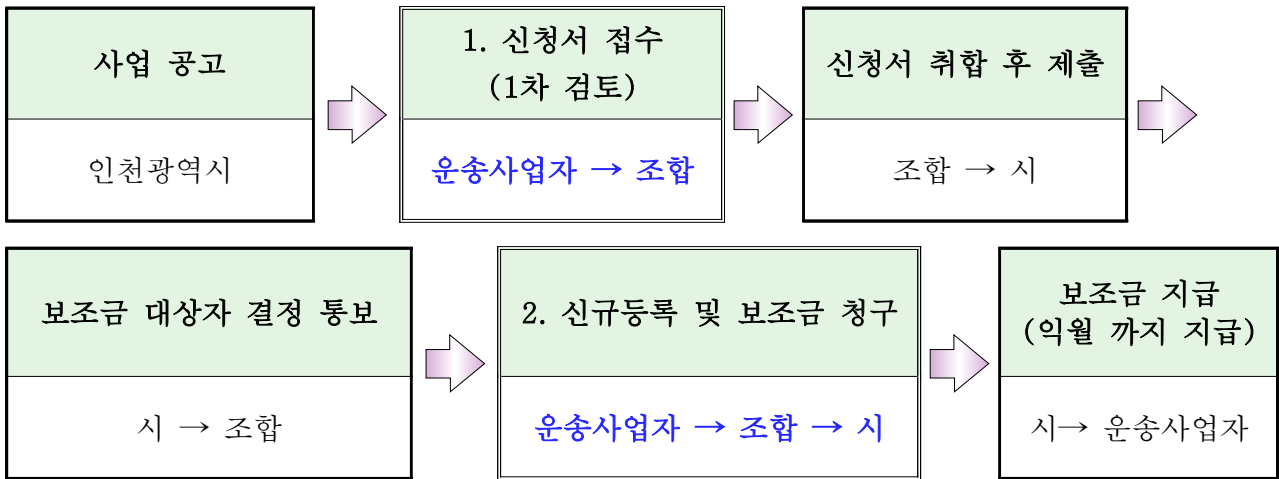
사업기간 : 2022. 2. 14. ~ 12. 23. ※ 예산 또는 사업량 소진 시까지  
(당초기간 : 2022. 2. 14. ~ 11. 30.)

신청접수 :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또는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에  
직접 방문 접수

보조금 지원기준 : 1대당 1,500천원

※ 노후택시 대·폐차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 대상 신청을 통해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함.

## □ 지원 절차



## □ 제출서류

### 1. 노후택시 대·폐차 비용 보조사업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

- ①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면허증 사본
- ② 차량등록증 사본(기존차량) 또는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
- 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별첨)
- ④ 인감증명서(※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대체가능)

→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된 후 노후택시 대·폐차 비용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

### 2. 노후택시 대·폐차 비용 보조금 지급청구서(별지 제2호 서식)

- ① 신규등록증 사본
- ② 통장 사본
- ③ 이전 또는 폐차확인 사실증명서
- ④ 신규 등록차량 사진

## □ 보조금 지급

인천광역시는 조합으로부터 보조금 지급 청구서가 제출되면 익월 까지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





< 별첨 >

##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★ 개인정보 수집·이용

- ◆ (수집·이용기관) 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 수행기관, 절차 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등
- ◆ (수집·이용목적) 대·폐차 보조금 지급 증빙
- ◆ (수집항목) 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차량등록번호, 생년월일
- ◆ (보유·이용기간)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 시까지 \* 근거: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
- ◆ (동의 거부권리 안내) 본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,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 할 수 있습니다.

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

2022년    월    일

신 청 자

(서명, 날인)

인천광역시장 귀중